

등록번호	기획예산과-15689
등록일자	2015.12.2.
결재일자	2015.12.3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예산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
최영아	김영혜	권순우	박진석	전결 12/03 황치영
협 조				

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계획



서울중구

기획재정국
기획예산과



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계획

2015 회계연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한 세출예산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 사고이월을 추진코자 함.

I 관련 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 제2항,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58조 (세출예산의 이월)
- 「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」 제27조 (이월예산의 집행)

II 사고이월 개요

사고이월의 원칙

사고이월은 ‘회계연도 독립의 원칙’의 예외로 그 대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·최소한으로 운영

- 각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,
-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의 신속적 운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
-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, 법령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운용

Ⅲ

세부 추진계획

추진대상

- 2015 회계연도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) 세출예산 중 2015.12.31. 까지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**2015. 12.31까지**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
 - ※ 세출예산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 구체적인 행위를 하고 **2015. 12.31까지 지출원인 행위부에 등재 필한 사업**
-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 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
- 공익·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
-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

불가피한 사유

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공급지연, 기타 장애요인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공사·제조 등이 당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 할 수 없는 경우

- ☞ 특별한 사유나 분명한 이유없이 이월을 전제로 한 공사의 발주나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사고이월 대상에서 제외
- ☞ 일상유지비 등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가능한 경비, 집행잔액을 임의로 타 사업비로 원인행위한 경우, 막연한 시설부대비 등은 사고이월 제외

지출못한 부대경비

지출원인행위를 필한 사고이월 사업에 부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게 된 종된 경비로써, 주된 사업추진에 따라 지출이 발생되어 구체적 또는 별도의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피한 경비에 한함

- ☞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주된 사업의 이월이 없는 부대경비만의 이월이나 주된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독립 추진되고 있는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한 사고이월 불가

추진절차

요 구 서 제 출	검 토	승 인 · 확 정	결 과 통 보	예 산 집 행
해당 부서장	기획예산과	부구청장	기획예산과	해당 부서
회계연도 완료 되는 날까지	적 정 여 부 검 토	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	사고이월 예산 승인·확정 후	사고이월예산 집행가능

유의사항

- 2015회계연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
 - ※ **2014 회계연도 사고이월예산은 2015.12.31.까지 집행완료**해야 함
- 2014 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은 재사고이월 불가(2015.12.31까지 집행완료)
- 2014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사고이월 가능
- 2015 회계연도말 까지 원인행위 하였으나, 2015. 12. 31일까지 집행이 완료되지 않는 모든 사업에 대해 확인 후 사고이월을 요구할 것
- 사유 및 요건이 불분명하거나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 사고이월 불가
- 이월예산을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 불가
- 지출 승인된 예비비의 세출예산은 이월사유가 충족된다면 이월 가능
- 특히, 금년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대량 이월이 예상되며, 가급적 연말까지 집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되, 연내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월, 지난연도 지출 등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출방법 검토

주요 사례

이미 계약이 체결된 `15년도 농작물 보험 등 12월분 경비를 1월에 실적을 집계하여 지급하는 경우 =>이월 검토

단, 계약 외의 경비(공공요금 등)는 “**지난연도 지출**”의 방법 우선 검토(재무과 지출팀 협의)

행자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지침 中(2015.7)

IV

행정사항

-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 추진계획 시행 : 2015. 12.4한(기획예산과)
-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 대상사업 요구서 제출 : 2015.12.18한 (해당부서)
 - 제출 서류 : 사고이월 요구서, 사업별 명세서, 사업 명세표, 사업별 증빙서류 (붙임)
 - ※ 사고이월요구서 제출 후 출납폐쇄기간('15.12.31)전 지출 등 이월금액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반드시 수정요구서를 제출하여 결산 시 사고이월액이 상이하지 않도록 주의
-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 확정 : 2015. 1.7한(기획예산과)
-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 내역 통보 : 2015. 1.8.한(기획예산과)

- 붙임 1. 사고이월 요구서 1부.
2. 사고이월 사업명세서 1부.
 3. 사고이월 명세표 1부.
 4. 사고이월 관련 규정 1부.
 5. 사고이월 이호조 매뉴얼 1부.